

|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8906   |
| 의 퇴 인  | 전용기의원     |
| 회 답 일  | 2026.7.23 |
| 추 계 번호 | 26B2395   |

#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듈러 건축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2억 4,200만원, 2032년 2,700만원 등 향후 5년간 3억 5,000만원(연평균 7,0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2032 | 합계  | 연평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|
| 혁신건축물 종합계획의 수립 등<br>(안 제5조) | 100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100 | 20  |
| 혁신건축위원회의 설치 등<br>(안 제7조)    | 12   | 12   | 12   | 12   | 12   | 60  | 12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2  | 12   | 12   | 12   | 12   | 160 | 32  |

주: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<br>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    | 안 제3조<br>(국가 등의 책무)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건축물의 조성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축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제도 개선과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(제1항) | 의무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건축물의 조성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축산업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제도 개선과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(제1항) | 의무규정 |

| 연<br>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2      | 안 제5조<br>(혁신건축물 종합<br>계획의 수립 등)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(제2항)<br>1. 혁신건축물 조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<br>2. 혁신건축물 조성 관련 산업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<br>3. 혁신건축물 조성 관련 국내외 시장 및 기술 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<br>4. 제25조에 따른 혁신건축물 조성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<br>5. 제26조에 따른 혁신건축물 조성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<br>6. 그 밖에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| 의무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(제5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3      | 안 제7조<br>(혁신건축위원회의<br>설치 등)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등을 위하여 혁신건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 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.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제2항)<br>1.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<br>2. 제10조에 따른 혁신건축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<br>3. 제12조에 따른 혁신건축물의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<br>4. 제16조에 따른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<br>5. 제17조에 따른 선도사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<br>6. 제19조에 따른 선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<br>7. 그 밖에 혁신건축물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4      | 안 제8조<br>(현황조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 효율적인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정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기술 동향, 혁신건축물 조성 및 관리 현황, 시장전망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5      | 안 제9조<br>(건축물 내외부<br>공간정보 및 데이<br>터의 구축·활용) |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등을 위하여 건축물 내외부에 대한 공간정보 및 유지·관리 등 혁신건축물에 관한 정보(이하 “혁신건축물 관련 정보”라 한다)를 구축할 수 있다.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| 연<br>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등을 위하여 건축물 내 외부에 대한 공간정보 및 유지·관리 등 혁신건축물에 관한 정보 (이하 “혁신건축물 관련 정보”라 한다)를 구축할 수 있다.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6      | 안 제10조<br>(혁신건축물의 지정 등)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및 혁신건축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다.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건축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7      | 안 제16조<br>(혁신건축 진흥구역의 지정)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촉진 및 기술 실증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혁신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진흥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(제3항)<br>1. 혁신건축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사업<br>2. 혁신건축물 관련 실증 및 성능검증 시설 등의 구축사업<br>3. 그 밖에 진흥구역 내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8      | 안 제19조<br>(선도사업에 대한 지원)     |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(제1항)<br>1. 보조금의 지급<br>2.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세·법인세·취득세·재산세·등록세 등의 세제 감면<br>3. 특별건축구역 지정<br>4.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부채납의 완화<br>5. 그 밖에 선도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| 재량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혁신건축물 선도사업 부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선도사업자에게 수익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.(제4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9      | 안 제20조<br>(혁신건축물의 인증)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의 조성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혁신건축물로 인증할 수 있다.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인증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의 운영 및 인증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고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0     | 안 제23조<br>(혁신건축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|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의 조성 지원과 산업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혁신건축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연<br>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혁신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 및 지원<br>2. 제7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24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 지원<br>3. 제20조에 따른 인증 운영기관의 업무 등<br>4. 그 밖에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br>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1     | 안 제24조<br>(혁신건축협의체)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과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건축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으며,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는 혁신건축물 조성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공공기관, 대학,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건축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2     | 안 제25조<br>(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촉진) |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(제2항)<br>1. 기술 실증사업 및 시범사업<br>2. 기술 정보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교육·홍보 사업<br>3.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한 산업계 협력사업<br>4. 그 밖에 혁신건축물 조성 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는 혁신건축물의 조성 지원과 산업 생태계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(제1항)<br>1. 교육기관 및 산학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<br>2. 관련 기업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<br>3. 관련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 연계 지원 사업<br>4.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지원사업<br>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<br>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(제3항) | 재량규정 |
| 13     | 안 제26조<br>(전문인력의 양성)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부는 혁신건축물 관련 국제 기술 교류,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고, 국내 기업의 혁신건축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4     | 안 제27조<br>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 |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외진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(제2항)<br>1. 국제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<br>2. 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<br>3. 해외 발주처와의 연계 및 수주 활동 지원<br>4.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및 투자 연계<br>5. 국제 전시회 참가 및 홍보 지원, 해외 인증 획득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| 연<br>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5     | 안 제26조<br>(권한의 위임·위탁) |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건축물 지정, 규제확인, 특례, 선도사업, 혁신건축물 인증, 지원센터 지정·운영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(제2항) | 재량규정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| 추계<br>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3조<br>(국가 등의 책무)         | —        | • (미대상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선언적 규정으로,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해당 조문에서 검토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5조<br>(혁신건축물 종합계획의 수립 등) | ○        | • (추계) 국토교통부 소관 유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참고하여 사업비용을 추산함<br>—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기본계획 및 기존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 추계하지 않음           |
| 3  | 안 제7조<br>(혁신건축위원회의 설치 등)    | ○        | • (추계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추산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8조<br>(현황조사)             | ×        | • (제3호) 현황조사의 범위·방법·주기 및 외부용역 여부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조사대상·표본규모·조사항목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9조<br>(공간정보 및 데이터 구축·활용) | ×        | • (제3호) 데이터의 종류·규모·규격, 사업대상지 수, 기존 세움터·공간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범위 및 시스템 구축방식이 불확정적이며,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|
| 6  | 안 제10조<br>(혁신건축물의 지정 등)     | —        | • (미대상) 제정안에 따른 혁신건축물 지정 신청 건수를 예측하기 곤란하고, 혁신건축물 심의 건은 안 제7조 혁신건축위원회를 통해 처리되므로 추가재정소요와는 관계가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<br>여부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7  | 안 제16조<br>(혁신건축 진흥구역<br>의 지정)   | ×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제3호) 혁신건축 진흥구역 지정 수, 진흥구역별 기반조성사업 규모, 실증·성능검증 시설 설치 계획 등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타나지 않아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안 제19조<br>(선도사업에 대한<br>지원)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안 제20조<br>(혁신건축물의 인증)           | ×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제3호)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고, 인증 수요와 심사기준 등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, 안 33조에서 인증 수수료를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인증 운영비가 수수료 등으로 조달될 가능성이 있어,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</li> </ul> |
| 11 | 안 제23조<br>(혁신건축지원센터<br>의 설치·운영) | ×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제3호) 혁신건축지원센터의 지정여부, 설치 개소 수, 센터별 운영 인력의 규모, 위탁 사무의 범위, 협의체 구성원 및 운영 방식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안 제24조<br>(혁신건축협의체)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안 제25조<br>(연구개발 및 기술<br>보급 촉진)  | ×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제3호) 구체적인 연구개발 과제, 지원대상, 지원단가 및 재원 부담 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관련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4 | 안 제26조<br>(전문인력의 양성)            | ×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제3호)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범위, 교육대상 인원, 연구시설·장비 확충 규모 및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불확정적이어서 현시점에서는 관련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 | 안 제27조<br>(국제협력 및 해외<br>진출 지원)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안 제5조)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정부 제출자료의 유사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례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산함
  - (유사사례)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실시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건의 사업비 평균은 9,950만원 수준임
  - (추계방법) 유사사례 사업비를 준용하여 1억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유사 기본계획 수립현황

(단위: 백만원)

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요기관  | 사업년도 | 사업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|
| 제2차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      | 국토교통부 | 2025 | 100 |
| 제2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연구      | 국토교통부 | 2025 | 98  |
| 국가물류기본계획(2026~2035) 수립 연구     | 국토교통부 | 2025 | 100 |
| 도로교통 분야 ITS 기본계획 2030 보완 연구용역 | 국토교통부 | 2025 | 100 |
|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| 995 |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

- (추계결과) 이상의 가정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를 참고하여 혁신건축물 종합계획을 시행 첫해인 2028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소요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3] 종합계획 수립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2032 | 합계 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기본계획 수립비용 | 100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100 |

주: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□ (안 제7조) 혁신건축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이 불확정적이므로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비용을 추산함

- 위원수: 수당지급이 필요한 민간위원 수는 10인으로 가정
  - －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민간위원 수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,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안을 참고함
- 개최일수: 연 4회로 가정
  - － 개최일수는 유사사례 위원회(모빌리티혁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등) 최근 개최사례를 참고함
- 회의참석수당 단가: 민간위원 회의당 참석수당은 1인당 30만원을 적용함
  - － 1인당 회의참석수당 20만원<sup>1)</sup>, 유인물비 등 안전검토비 10만원
- (추계결과) 국토교통부 내 유사 위원회 운영비를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비용을 추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4]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2032 | 합계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| 위원회운영비 | 12   | 12   | 12   | 12   | 12   | 60 |

□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혁신건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5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2032 | 합계 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기본계획 수립비용 | 100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—    | 100 |
| 위원회 운영비   | 12   | 12   | 12   | 12   | 12   | 60  |
| 합계        | 112  | 12   | 12   | 12   | 12   | 160 |

주: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내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사항으로,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1) 기획재정부(2026)의 「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함  
 -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,000원내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내로 편성  
 -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·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## IV. 부대의견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,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남 희 | 예승우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|
| 남 희 | 02-6788-3737 | nhee@nabo.go.kr |